

하도급계약에 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⑥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1. 설계에 누락된 공사대금 지급요구

Q 원도급자가 당초 도급수량 과소산정을 사유로 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진행 중이다.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확정하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도급자는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확정하기 전에 설계에 누락된 공사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불요청하는 바, 이럴 경우 요청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또 하도급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까지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있어(수량산출 근거 없음) 하도급공사대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자가 과투입투자금액을 보전해 달라 했을 경우(계약서와 상관없이) 원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하도급자가 원도급자 지급자재를 설계도 및 시방서 외 과다사용해 원도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감액처리 해도 되는지 여부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의 지시 등에 의해 추가 공사분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추가소요금액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지급자재를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2. 하도급공사 중 추가비용 소요됨

Q 1) 하도급공사 중 추가비용이 소용되는 경우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 어려운바 그 해결책이 있는지?

2)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도급계약은 1993년에 체결됐고,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은 1996년에 체결됐다. 이때 하도급계약금액이 1993년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설계금액으로 체결됐으므로 1994, 1995, 1996년도 도급계약에 적용된 ESC를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제16조에서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청구토록 자료 등을 제시하여 도급계약의 설계변경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원칙적으로는 적법하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금액을 최초 도급금액(계약시점 기준 3년전 단가)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혐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주재료의 단종으로 신제품 교체시 추가비용 청구

Q 도장공사의 하도급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시 주재료(도료)가 단종되고 신제품으로 대체되면서 단가가 인상되어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바 원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적당한 음주도 두뇌를 위축시키기는 마찬가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이 50대 중반 1,909명의 두뇌를 MRI로 촬영해봤다. 그 결과 과거의 음주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뇌도 그만큼 많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적당한 음주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두뇌를 위축시키는 위험 요소인 것

이다. 이 연구 결과를 분석해본 토마스 제퍼슨 대학의 켄턴(Edgar Kenton) 박사는 ‘하루 몇 잔 정도의 음주 습관은 건강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코올이 두뇌 위축 현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